

의안번호	제 591 호
의 결 연 월 일	2016년 4월 일 (제355회)

충청북도교육청 교육기부 진흥 조례안

발 의 자	윤 홍 창 의원 등 7인
발의연월일	2017년 4월 11일

충청북도교육청 교육기부 진흥 조례안

(윤희창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591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17년 4월 11일

발 의 자 : 윤희창, 정영수, 이종욱,
이숙애, 임현경, 최광옥,
박한범의원

1. 제정이유

교육기부에 대한 인식 확산과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 확보와 활용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폭넓은 교육기회 제공과 공교육 강화를 목적으로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교육기부 진흥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(안 제3조)
- 나. 교육기부 진흥 추진계획 수립·시행(안 제4조)
- 다. 교육기부 진흥 사업(안 제5조)
- 라. 교육기부 협약 체결 및 취소(안 제6조, 안 제7조)
- 마. 교육기부진흥위원회 설치 및 운영 (안 제9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붙임

나. 비용추계서 : 해당사항 없음

다. 관계부서 협의 : 협의완료(충청북도교육청 진로직업특수교육과)

라. 기 타

1) 입법예고 : 충청북도의회 공고 제2017-16호

2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 사무 없음

3) 부패영향평가 : 해당 없음

4) 성별영향분석평가 : 해당 없음

충청북도교육청 교육기부 진흥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역사회에 다양한 교육자원 확보와 활용을 통한 공교육 역량 강화와 학생들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하여 교육기부 문화 확산과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교육기부”란 공공기관·대학·기업·단체·개인의 지식, 기술, 경험, 시설 및 환경 등 지역사회가 보유한 인적·물적 자원을 유·초·중등교육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비영리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.
2. “학생”이란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항에 따라 설립·운영되는 유치원 및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,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.

제3조(교육감의 책무) 충청북도교육감(이하 “교육감“이라 한다)은 교육기부 문화 확산과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제4조(계획의 수립) ① 교육감은 교육기부 진흥 추진계획(이하 “추진계획“이라 한다)을 매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.

1. 교육기부 진흥 기본방향 및 목표
2. 교육기부 진흥 시행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

3. 교육기부를 활용한 학교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위한 연구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
4. 교육기부 진흥 홍보에 관한 사항
5. 교육기부를 활용한 교육활동 추진 현황 및 결과에 관한 사항
6. 지방자치단체·대학·기업 등과의 교육기부 협력체계 구축 및 교육적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
7. 그 밖에 교육기부 진흥에 관한 사항

제5조(교육기부 진흥 사업) 교육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지역사회의 교육기부 자원 발굴 및 교육기부 참여 유도
2. 교육기부의 교육적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교원 연수
3. 교육기부와 진로·직업체험 및 자유학기제, 창의적 체험활동·방과후학교와 연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강화
4. 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한 지역단위 교육기부 활성화 사업
5. 교육기부 진흥을 위한 컨설팅 실시
6. 홈페이지, 소셜미디어 등을 활용한 다양한 홍보 전개
7. 그 밖에 교육기부 활성화와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6조(협약의 체결) ① 교육감은 교육기부 진흥을 위하여 유관기관, 단체, 기업 등과 교육기부 협약(이하 “협약”이라 한다)을 체결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협약을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협약 당사자 간의 역할
2. 구체적인 교육기부 대상 및 내용
3. 교육기부 방법 및 시기
4. 사회적 참여와 공헌을 통한 파트너십 구축
5. 그 밖에 교육기부를 통한 발전 가능성 등

제7조(협약의 취소) 교육감은 제6조제1항에 따른 협약체결 당사자의 교육기부 및 협약에 따른 의무이행이 협약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거나 교육기부 활동을 지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협약을 취소 또는 중단할 수 있다.

제8조(전산망 활용) 교육감은 교육기부에 대한 효율적 참여와 운영 이용의 촉진을 위해 전산망을 활용한 시스템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제9조(위원회의 설치 등) ① 교육감은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해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기부진흥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②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

제10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체결한 교육기부 관련 협약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한 것으로 본다.

관계 법령

□ 지방자치법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□ 초·중등교육법

제2조(학교의 종류) 초·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.

1. 초등학교·공민학교
2. 중학교·고등공민학교
3. 고등학교·고등기술학교
4. 특수학교
5. 각종학교

□ 유아교육법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“유아“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.
2. “유치원“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·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.